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식품점

서문

본 간행물은 식료품점의 소유자, 관리자 및 기타 경영자를 대상으로 고안되었으며 식료품점의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및 사용세법 적용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간행물의 목적상 식료품점은 식품 및 관련 품목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식료품점에는 백화점 내에 별도로 마련된 식료품 부서가 포함되지만 델리(즉석 식품), 소규모 상점 및 일반 상점, 식료품을 부수적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간행물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식료품점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Grocery Stores*)를 www.cdtfa.ca.gov/industry/grocery.htm에서 확인하거나 1-800-400-7115(CRS: 711)를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판매자 허가증 취득, 재판매 증명서 사용, 판매세 및 사용세 징수 및 신고, 사업의 인수, 매각 또는 중단, 기록 보존과 관련한 일반 정보를 다루는 **간행물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3-K,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을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정보 및 규정, 지침, 본 간행물에서 참조된 다른 간행물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추가 정보** 섹션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간행물이나 다른 간행물 개선을 위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의견 또는 제안을 보내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참고: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물 작성 시점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합니다.

| 챕터 | 페이지 |
|---|-----|
| 세금의 일반적 적용 | 1 |
| 과세 매출 | 1 |
| 비과세 매출 | 1 |
| 식품 매출 | 2 |
| 비타민워터 | 2 |
| 콤보 패키지 | 2 |
| 케이크의 비식용 장식 | 4 |
| 식품 또는 식이 보충제/보조제(첨가제) | 4 |
| 의사가 제공하는 식이 보충제 | 5 |
| 허브 제품 | 5 |
| 따뜻한 조리 식품 | 5 |
| 따뜻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식사 패키지의 테이크아웃 판매 | 5 |
| 식품 서비스 영업 시설 | 6 |
| 기타 요금 및 거래 | 6 |
|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California Redemption Value) | 6 |
|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 | 7 |
| 할인, 쿠폰,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 7 |
|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대금 과세 시점 | 8 |
| 제3자 제공 프로모션 프로그램 | 8 |
| 할인 클럽 카드 | 9 |
| EBT 카드 - CalFresh 혜택 | 9 |
| 필름 현상 | 10 |
| 복권 | 10 |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 10 |
| POS 수수료(직불 카드 사용 수수료) | 10 |
| 선불 전화 직불 카드 및 선불 무선 카드 | 10 |
| 카펫 청소세제 | 11 |
| 고정자산의 판매 | 11 |
| 자체 소비용 상품 | 11 |
| 자판기 | 11 |

| | |
|------------------------------------|----|
| 세금 신고: 식료품점 관련 특별 고려 사항 | 12 |
| 총 매출 | 12 |
| 면세 식품 매출 및 과세 매출 계산 방식 | 12 |
| 전자 스캐닝 시스템 | 12 |
| 전자 스캐닝 시스템을 사용하는 식료품점의 기록 보존 요건 | 13 |
| 구매 비율 방식(식료품점의 공식) | 14 |
| 수정된 구매 비율 방식 | 16 |
| 원가가산법—과세 상품 | 17 |
| 소매재고법 | 20 |
| 지양해야 할 기타 방식 | 20 |
| 판매세 기록 | 20 |
| 과세 대상 판매 기록 | 21 |
| 추정법 | 21 |
| 공제 | 21 |
| 손실 | 21 |
| 감모손실(원인 불명 손실) | 21 |
| 강도, 절도, 상점 절도 | 21 |
| 대손금 | 21 |
| 사업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22 |
| 추가 정보 | 23 |
| 부록: 식료품점 판매 제품 분류 | 25 |

세금의 일반적 적용

식품, 상품 및 기타 유형의 재화 매출에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 챕터는 식료품점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고안되었습니다. CDTFA 정보 및 규정, 지침, 본 간행물에서 참조된 다른 간행물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dtfa.ca.gov/industry/grocery.htm에 방문하여 식료품점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Grocery Stores) 또는 추가 정보 섹션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과세 및 비과세 매출의 예시

다음 예시에 모든 과세 및 비과세 매출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 매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의 매출에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 알코올 함유 음료
- 책과 출판물
- 카메라 및 필름
- 탄산수 및 발포수
- 탄산 함유 청량음료 및 혼합물
- 의류
- 화장품
- 건강 보조 식품
- 위생용품 잡화, 장난감, 금속 제품, 생활용품
-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 시설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식품 서비스 영업 시설 참조)
- 따뜻한 조리 식품(따뜻한 조리 식품 참조)
- 얼음
- 콤팩트(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경우)
- 약용껌(Nicorette, Aspergum)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 묘목
- 아스피린, 코푸시럽, 기침 완화 사탕, 목감기용 사탕 등 일반 의약품
-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 비누 또는 세제
- 스포츠 용품
- 담배 제품



비과세 매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의 매출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아용 분유(아이소밀 포함)
- 요리용 와인
- 프로틴바, 에너지바, 파워바 등
- 식품 — 이유식, 인공 감미료, 사탕, 껌, 아이스크림, 소포장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바, 과일 및 야채 주스, 올리브, 양파 및 마라스키노 체리가 포함됩니다. 식품에는 무알코올 또는 무탄산 음료 및 칵테일 믹스도 포함됩니다. 액상 또는 냉동 중 어느 형태로 판매되든 면세 대상입니다.

The Sale of Tobacco Products to Persons Under 21 Years of Age Is Prohibited by Law and Subject to Penalties

To Report an Unlawful Tobacco Sale Call
1-800-5 ASK-4-ID

Valid Identification May Be Required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2952 21 U.S.C. 3871(d)
This sign must be readable by the consumer and must not be altered, covered or obliterated in whole or in part.



- Scan camera or QR code reader on your smartphone.
- Hold your smartphone over QR Code so that it clearly reads the entire content.
- Look for the notification banner or pop to report child's status.

- 그레놀라바
- 콤부차(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이며 자연 발포성인 경우)
- 스파클링 사이다
- 무탄산 스포츠음료(Gatorade, Powerade, All-Sport 등)
- Pedialyte(소아용 이온음료)
- 전화카드(선불 전화 직불 카드 및 선불 무선 카드)
- 물 — 무탄산, 비발포성 생수

식품 매출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매출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식품 매출이 과세 대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시설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식품 매출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품목이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품목은 식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알코올 함유 음료
- 탄산음료(예: 슬러시와 같이 탄산이 함유된 반냉동 음료, 하단의 “참고”도 확인하십시오)
- 착색 추출물
- 건강 보조 식품
- 얼음
- 일반의약품
- 담배 제품



이와 마찬가지로 개, 고양이, 새 및 기타 반려동물이 소비하거나

낙시용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탄산 함유 과일 주스. 100% 천연 과일 주스로 인정되는 탄산 제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일 주스에 벤조산나트륨과 같은 방부제 또는 기타 첨가제가 함유된 경우 천연 과일 주스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입니다.

비타민워터

일반 생수와 유사한 크기, 부피의 용기에 담겨 제공되는 무탄산 비타민워터 및 스포츠음료는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이 테이크아웃 판매된 경우 그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탄산 생수는 특히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비타민이 강화된 빵과 같이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받아들여지는 품목에 비타민과 같은 영양 성분을 특수하게 혼합하거나 조합하는 것 만으로는 제품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식품 제품명, 설명 또는 제품 광고에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02](#), [식품을 참조해 주십시오](#).

콤보 패키지

콤보 패키지에는 식품 또는 식품과 비식품 품목의 콤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즈, 크래커 또는 과일 등 식품만 포함된 선물 패키지(바구니)를 구성할 경우, 해당 선물 패키지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선물 바구니에 비식품 제품을 포함하려는 경우 콤보 패키지의 과세 대상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용기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담은 포장 및 포장재로 간주됩니다.

개별 품목의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비식품 제품의 소매가를 계속 별도로 책정해야 합니다:

1.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품목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2. 비식품 제품의 소매가가 용기를 제외한 전체 패키지 소매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은 용기 가격을 제외한 비식품 제품의 소매 판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콤보 패키지의 개별 품목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으며 판매 품목에 다음 구성 요소 포함:

| | |
|---------------------|----------------|
| 육류 및 치즈, 소매가(면세 식품) | \$22.00 |
| 식기, 소매가(비식품) | 5.00* |
| 내용물의 총 소매가 | \$27.00 |
| 트레이(용기) 소매가 | 3.00 |
| 총계 | 30.00 |
| 판매세(\$5* x 8.25%) | .41 |
| 콤보 패키지 총 판매가 | <u>\$30.41</u> |

* 비식품의 총 소매가

상기 예시에서 비식품 품목의 소매가 \$5.00는 용기(트레이)를 제외한 전체 패키지 소매가의 10%(\$27 x 10% = \$2.70)를 초과합니다. 또한 용기의 소매가는 전체 패키지 소매가의 50% 미만입니다. 콤보 패키지의 개별 품목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으므로 트레이 가격을 제외한 비식품 제품의 소매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5.00 x 적정 세율).

개별 품목의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용기 가격을 포함한 전체 패키지의 소매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비식품 제품의 소매가가 용기를 제외한 전체 패키지 소매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콤보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품목의 비용을 입증할 기록이 없는 경우

패키지의 개별 품목 비용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미리 포장된 선물 바구니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콤보 패키지의 개별 품목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없고 판매 품목에 다음 구성 요소 포함:

| | |
|---------------------|----------------|
| 육류 및 치즈, 소매가(면세 식품) | \$22.00 |
| 식기, 소매가(비식품) | 5.00 |
| 내용물의 총 소매가 | \$27.00 |
| 트레이(용기) 소매가 | 3.00 |
| 총계 | \$30.00 |
| 판매세(\$30 x 8.25%) | 2.48 |
| 콤보 패키지 총 판매가 | <u>\$32.48</u> |

이 예시에서 비식품 품목의 소매가인 \$ 5.00는 용기를 제외한 전체 패키지 소매가의 10%(\$27 x 10% = \$2.70)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콤보 패키지의 개별 항목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트레이 가격을 포함하여 전체 패키지의 소매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30.00 x 적정 세율).

개별 품목의 비용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거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패키지 판매가는 비과세입니다:

1. 비식품 소매가가 내용물(용기 제외) 총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2. 용기의 소매가가 전체 패키지 가격의 50%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판매 품목에 다음 구성 요소 포함:

| | |
|----------------|----------------|
| 치즈, 소매가(면세 식품) | \$45.00 |
| 작은 칼, 소매가(식품) | 5.00 |
| 내용물의 총 소매가 | \$50.00 |
| 용기, 소매가 | 10.00 |
| 콤보 패키지 총 판매가 | <u>\$60.00</u> |

비과세 콤보 패키지는 상기 예시에 명시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비식품 품목의 가격 \$5.00은 내용물의 총 가격인 \$50의 10%입니다. 용기 가격 \$10.00은 전체 패키지 소매가의 50% 미만입니다($\$60 \times 50\% = \30). 해당 매출은 비과세 매출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참고: 상기 예시에서는 8.25%의 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보여드렸지만 사업체가 위치한 곳의 실제 세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율을 알아보시려면 당사 웹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시 및 카운티 판매세 및 사용세 세율\(California City and County Sales and Use Tax Rates\)](#)을 확인하거나 당사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02, 식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케이크의 비식용 장식

비식용 장식이 포함된 케이크 또는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장식의 가격이 케이크 또는 베이커리 제품 총 소매가의 50% 이상이라면 장식의 소매 판매가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케이크나 베이커리 제품에 부과되는 비용과 장식 비용을 구분해야 하며, 장식의 소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송장에서 장식의 소매가가 별도로 명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매가가 별도로 명시되고 장식물의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장식물 가격이 케이크 또는 베이커리 제품 총 소매가의 50%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식 소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또는 건강 보조 식품/보조제(첨가제)

일반적으로 식품 보충제, 식이 보충제, 식품 첨가제 또는 식이 첨가제로 판매되는 액상, 분말, 과립, 정제, 캡슐, 로젠지형 및 알약 형태의 제제에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보충제 또는 첨가제는 면세 식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정된 형태 중 하나로 제품이 판매될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라벨 또는 포장에 식품 보충제, 식품 보조제, 식이 보충제 또는 식이 첨가제로 명시된 경우 해당 제품 판매 시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식이성 영양결핍을 치료하거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또는 칼로리와 관련된 인체 영양소를 증가, 감소시키기 위해 처방되거나 설계된 제품의 경우 판매 시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상기 명시된 형태 중 하나인 경우, 포장에 해당 형태로 명시되지 않고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또는 칼로리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식이 보충제로 인식되면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대구 간유, 밀배아유 및 넙치 간유 등이 있습니다.



규정 1602, 식품 및 규정 1591, 의약품 및 의료기기(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개정 조항은 제한된 상황에서 식이 보충제가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비만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감독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인 환자에게 보충제를 제공할 경우 적용됩니다.

의사가 제공하는 식이 보충제

일반적으로 보충제가 규정 1602, 식품에 명시된 완전 식이 식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비만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감독되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인 환자에게 식이 보충제를 처방한 경우 판매 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허브 제품

제품의 라벨 표시에 따라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식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이 규정 1591,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명시된 의약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으로는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라벨이나 제품 브로셔에 의약적 효과에 대한 문구가 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가 절단된 잎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허브는 규정 1602, 식품에 명시된 형태 중 하나가 아니므로 라벨 내용과 무관하게 보충제나 첨가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미세 입자로 갈거나 분쇄한 말린 허브만이 분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브가 보충제 또는 첨가제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간주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라벨에 보충제 또는 보조제로 표시된 경우
- 특정한 식이성 영양결핍을 치료하거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및/또는 칼로리 섭취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처방 또는 고안된 경우.

허브가 포장이나 라벨에 식품 보조제, 식품 첨가물, 식이 보조제 또는 식이 첨가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매되는 허브는 세금이 면제되는 식품입니다.

따뜻한 조리 식품

따뜻한 조리 식품의 매출은 시설 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판매든 테이크아웃 판매든 관계없이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식품을 실온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따뜻한 조리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뜻한 식품은 따뜻한 식품으로 판매될 용도이므로, 판매 시점에 식어 있더라도 '따뜻한 조리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뜻한 조리 식품의 예시로는 따뜻한 피자, 따뜻한 바비큐 치킨, 따뜻한 스페어립, 따뜻한 팝콘, 따뜻한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일반 원형 램프로 가열되는 밀폐된 진열장에서 견과류를 판매할 경우 해당 매출은 따뜻한 식품의 매출이며,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따뜻한 부용, 콩소메, 수프도 따뜻한 조리 식품으로 간주되며 판매 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베이커리 품목, 따뜻한 커피 및 기타 따뜻한 음료가 개별적으로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따뜻한 조리 식품에는 콤보의 단일 가격이 설정된 따뜻한 품목 및 차가운 품목의 콤보 제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양배추 샐러드, 롤, 핫 치킨의 콤보 및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도넛과 커피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뜻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식사 패키지의 테이크아웃 판매

테이크아웃 판매되는 콤보 패키지에 차가운 식품과 탄산음료가 포함된 경우 탄산음료 판매 가격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콤보 패키지에 차가운 식품과 탄산음료 또는 주류를 제외한 차가운 음료가 포함된 경우 패키지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콜드샌드위치, 감자칩, 아이스티로 구성된 콤보를 단일 가격으로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음료가 탄산음료인 동일 패키지를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에서 탄산음료 가격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식품 서비스 영업 시설

귀하가 제공하는 테이블, 의자 또는 기타 시설에서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식품

매장 내에 스낵바, 탄산음료 기계, 카페테리아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 시설이 마련된 경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품이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테이블, 의자 또는 카운터나 트레이, 유리잔, 그릇 또는 기타 식기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면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델리 섹션에서 서서 또는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카운터를 제공하는 경우 카운터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테이크아웃 판매

일반적으로 차가운 식품의 테이크아웃 판매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되는 차가운 식품에 대해 면세를 청구할 경우 식품 즉시 섭취가 가능한 시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비과세 매출 영수증을 과세 대상인 '매장 내 식사' 매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된 금전등록기 키의 테이프, 매출 전표 사본 또는 감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유사한 기록 등이 영수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장 매출의 80% 이상이 식품 판매에서 발생하고, 매장 매출의 80% 이상이 과세 대상인 매장 내 식사 또는 따뜻한 식품의 판매일 경우 차가운 식품의 테이크아웃 매출도 세금 부과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식사 및 식음료를 고객의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세금 목적상 케이터링 업체로 간주됩니다. 케이터링 업체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간행물 22](#), 식음료 산업(Dining and Beverage Industry)(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22-K](#), 식음료 산업)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추가 정보](#) 섹션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품 배달만을 수행할 경우, 즉 식품을 제공하는 데 자사 직원 또는 그릇, 식기류 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엔 케이터링 업체가 아닌 식품 판매자로 간주됩니다. 식품 판매자는 본 간행물에 설명된 바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기타 요금 및 거래

다음 정보는 식료품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매출 및 요금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California Redemption Value)

|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표 | |
|---|------------------------------|
|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및 기타 특정 금속 소재의 용기에 담겨 판매 될 경우 CRV 부과 대상인 음료(액체,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이며 사람들이 마시는 용도인 경우) | 용기 유형과 무관하게 CRV 부과 대상이 아닌 음료 |
| 물(탄산 및 무탄산) | 우유 |
| 커피와 차 음료 | 의료 식품(아미노산 무함유 식품 등) |
|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및 과일 음료(탄산 및 무탄산) | 유아용 분유 |
| 맥주 및 기타 맥아음료 | 와인(무알코올 및 스파클링 포함) |
| 알코올 함량이 7% 이하인 와인 및 증류주 콜러 | 알코올 함량이 7% 이상인 증류주 |
| 16온스 이하 용기에 담긴 야채 주스 | 16온스 초과 용기에 담긴 야채 주스 |
| 46온스 미만 용기에 담긴 100% 과일 주스 | 46온스 이상 용기에 담긴 100% 과일 주스 |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에 대한 CRV 요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료 판매에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 CRV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음료 판매에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CRV 요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 지불 예정 금액은 음료 또는 용기 및 CRV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CRV 요금만 부과하더라도 음료 판매가 과세 대상일 경우 CRV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무탄산 음료 매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용기에는 CRV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탄산음료와 주류 매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용기에 부과되는 CRV 요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음료 매출의 예시:

- 맥주 및 기타 맥아음료
- 탄산 미네랄워터 및 소다수
- 액상 탄산 청량음료
- 와인 쿨러 및 기타 주류 쿨러

과세 대상이 아닌 음료 매출의 예시:

- 무탄산, 100% 천연 과일 주스
- 무탄산, 비발포성 생수

CRV 프로그램은 재활용 부서(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CalRecycle)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V 요금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www.calrecycle.ca.gov/bevcontainer 통해 CalRecycle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

2020년 1월 1일부터 특정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의 판매세 및 사용세는 면세 대상입니다.

특정 기저귀 및 생리/위생용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에 한합니다:

- 기저귀: 영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디자인, 제조, 가공, 제작 또는 포장된 제품
- 탐폰, 주로 생리/위생용으로 디자인되고 라벨이 지정된 생리대, 생리용 스펀지, 생리컵

해당 품목의 매출은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의 보고된 매출 총액에 계속 포함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매출에서 '기저귀' 및/또는 '생리/위생용품'으로 그에 대한 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할인, 쿠폰,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특정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수령하는 대금에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식료품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제3자는 가격 인하분을 직접 보상합니다. 제품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할인을 받는 대신 판매가를 인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대금 과세 시점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제3자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금은 과세 매출 총액의 일부입니다:

1. 제3자로부터 대금 할인을 받으려고 특정 제품의 판매가를 인하하도록 제3자가 요구한 경우
2. 대금 수령 조건이 확정되어 통제 불가능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확정'이라는 용어는 귀하가 통제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시: 상점에 제품 관련 표지판을 배치하면 제3자의 대금을 받는 경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의 예시로는 특정 기간 내에 할인된 제품에 대한 판매 할당량을 충족해야만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대금은 거래별 기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즉, 계약상 대금이 특정 제품의 특정 판매와 연결되어야 함). 제3자는 계약을 통해 지정된 가격 인하분을 식료품점에 보상합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제3자 대금은 과세 대상 총 수입의 일부입니다. 판매를 보고할 때 고객이 지불한 금액과 제3자가 가격 인하 보상으로 지불할 금액을 포함하여 특정 제품의 판매로 받은 총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이다운(Buy-down) 리베이트 프로그램 및 제조업체 쿠폰 가치가 제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또는 사용세가 부과되는 경우 판매가)의 일부인 두 가지 예시입니다:

1. 제조업체에서 직접 병따개를 구매하고 바이다운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병따개는 \$5.00로 판매하지만 바이다운 리베이트 플랜에 따라 병따개를 \$4.50에 판매하고 제조업체로부터 \$0.50를 받기로 합니다. 세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에 대한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전체 판매로 인해 수령한 \$5.0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고객이 신문의 쿠폰을 가져와 판매 시 제시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 가격 할인을 받습니다. 쿠폰은 '제조업체 쿠폰'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가 가격 인하분을 보상하고 고객이 제조업체 쿠폰을 제시하므로 해당 쿠폰의 가치는 총 수입에 포함됩니다. 세금은 제품의 소매 판매 정가, 즉 고객이 지불한 금액 및 제조업체의 쿠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3자 제공 프로모션 프로그램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고객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대금은 해당 대금이 비과세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시할 때까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의 추가 예시는 [규정 1671.1](#), [할인](#), [쿠폰](#), [리베이트](#) 및 [기타 인센티브\(Discounts, Coupons, Rebates, and Other Incentives\)](#)를 참조하십시오.

판매세를 징수하거나 사용세를 징수해야 할 경우, 세금 납부 기준 금액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자가 제공하거나 지불한 과세 대상 할인,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금액이 이에 포함됩니다. 즉, 고객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매 정가(할인 전 가격)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영수증, 판매 송장 또는 기타 매출 증빙 문서에 해당 금액을 항목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 또는 고객에게 발송된 광고, 전단지 또는 브로셔에 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모든 품목의 판매가에 세금이 추가되며 과세 대상 할인 또는 리베이트 금액도 세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매점에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각각의 소매점 업장에서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를 별도로 소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또는 CDTFA에서 발급한 기타 허가증이나 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간행물 78,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8-K](#),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할인 클럽 카드

할인 클럽 카드 사용 시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3자의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 클럽 카드와 관련된 가격 할인은 과세 매출 총액의 일부가 아닙니다. 클럽 카드 할인에 대한 보상으로 제3자(제조업체 등)에서 지불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부 상점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고객 구매에 기반하여 '클럽 보상'(할인 쿠폰 또는 '보상 금액' 등)도 제공합니다. 해당 보상 할인은 소매업체 현금 할인으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규정 1671.1, 할인, 쿠폰, 리베이트 및 기타 인센티브 및 간행물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BT 카드 - CalFresh 혜택

CalFresh는 연방 정부에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수입 자격 규정을 충족하는](#) 유자격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CalFresh 혜택이 포함된 EBT(전자적 혜택 전송) 카드는 각 [카운티의 인사부 또는 사회복지부](#)에서 유자격 개인에게 발급합니다. CalFresh 혜택은 유자격 개인이 공인 소매 식품점에서 [지정된 식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Fresh 혜택으로 구입한 지정된 식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식품 판매가 과세 대상이더라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CalFresh 혜택으로 탄산음료, 얼음, 식용 색소 판매 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귀하의 고객이 과세 대상 식품 항목의 총 금액을 초과하는 CalFresh 혜택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는 비과세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과세 대상 품목의 모든 판매에 적용됩니다.

SNAP에 준하여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품목은 미국 정부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CalWORKs 현금 보조 혜택으로 구매한 품목은 미국 정부에 대한 판매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CalFresh 혜택을 활용하여 판매 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lFresh 혜택을 활용한 판매를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CalFresh 혜택 판매 공제액을 실제 기준(CalFresh 혜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 판매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CalFresh 혜택 판매를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대신 허용되는 공제액을 전산 처리하는 승인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 1

매출에 대해 공제를 받고 세금 신고서 제출 기간 동안 상환된 CalFresh 혜택 총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 2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과세 대상 품목 총액을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과세 대상 품목과 면세 식품 구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 2%보다 큰 경우 더 높은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 참조:

| | |
|----------------------------|----------------------|
|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한 지정 과세 식품 | \$5,000 (a) |
| 면세 식품 | <u>\$130,000 (b)</u> |
| 총계 | <u>\$135,000 (c)</u> |

허용 가능한 CalFresh 혜택 공제 비율: (a) \$5,000 ÷ (c) \$135,000 = 3.7%

고객은 CalFresh 혜택을 이용하여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애완동물 사료, 비누, 종이 제품, 비타민, 매장에서 먹을 음식 또는 뜨거운 음식과 같은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방식 2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품목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이러한 품목들이 CalFresh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총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름 현상

일반적으로 다음에 대한 요금을 포함하여 필름 현상과 관련된 모든 요금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 사진 확대
- 사진 이미지를 CD, DVD 또는 디스크에 담기
-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사진 인화

일반적으로 새 사진의 컬러링 및 토틀링 요금에도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노출 필름에서 네거티브를 현상하는 요금**이 항목별로 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과세 대상인 리버스 프로세스 방식의 필름 현상 요금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 방식은 필름을 네거티브로 현상하고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또는 홈 무비 필름 형태의 포지티브로 반전하는 과정을 포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68](#), *사진 작가, 사진 보정가 및 사진 인화실(Photographers, Photo Finishers, and Film Processing Laboratories)*을 참조하십시오.



복권

복권 수입은 세금 목적상 소매업체 총 수입의 일부가 아니며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복권 수입을 매출과 구분하기 위한 적절한 기록 보존 절차를 구성해야 합니다. 면세 복권 수입에 대한 적절한 문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이 과세 매출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구독 기반으로 판매되는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신고된 과세 매출에 해당 품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카탈로그, 지도, 책과 같은 품목의 매출도 과세 대상입니다.

POS 수수료(직불 카드 사용 수수료)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될 경우 직불 카드 수수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수수료가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지 않음
- 수수료는 거래 비용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음

선불 전화 직불 카드 및 선불 무선 카드

일반적으로 선불 전화 직불 카드 매출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하단의 예외 참조). 해당 매출은 실제 제품 판매가 아닌 미래의 전화 서비스 판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불 무선 통화 시간이 포함된 전화카드 판매는 캘리포니아주 소매 거래로 판매된 경우 긴급 전화 사용자(911)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판매자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Sellers of 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uppliers\)](#)를 참조하십시오.

예외: 선불 전화 카드를 향후 전화 서비스용이 아닌 수집품의 가치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클래식 자동차의 사진이 있는 만료된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수집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해당 매출은 판매세 또는 사용세 과세 대상입니다.

카펫 청소

대여료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수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카펫 청소 장비 구매 시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지불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펫 청소 장비 구매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비누와 세제 요금을 비롯한 모든 대여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세 신고서에 사용세를 신고한 경우*:

- 장비, 비누 및 세제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대여료를 일시불로 청구할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비누 및 세제의 소비자로서 간주되며 해당 품목 구매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장비 및 비누와 세제에 각각 별도의 요금을 청구할 경우, 장비 대여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비누와 세제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재판매 인증서를 사용해 비누와 세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납세 신고 시 사용세를 신고할 경우, 장비 대여 서비스를 처음 추가한 신고 기간의 마감일까지 구매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판매

쇼케이스, 곤돌라, 금전등록기 등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고정자산 판매 시 세금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산이 간헐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업 매각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소비용 상품

재판매를 위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한 과세 상품에는 구매 가격으로 산정된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사용의 예시로는 담배, 비누 및 소유자가 집으로 가져가거나, 친구, 동료 또는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단체에 기부한 기타 과세 품목이 있습니다(하단의 “참고 사항” 참조). 해당 상품의 비용은 납세 신고서에서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단체에 기부. [규정 1669](#), 재판매를 위해 보유한 자산의 실연, 전시 및 사용—일반(Demonstration, Display, and Use of Property Held for Resale—General)에서 정의된 대로, 재판매 재고의 자산을 적격 조직에 기부할 경우 사용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조직에 대한 기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봉투 및 기타 포장 용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판매를 위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표 및 상점 장비 등의 모든 기타 용품 구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품목은 판매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지역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합니다. 부가되는 세금이 없는 타주에서 장비 또는 용품을 구매한 경우 납세 신고서에서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 항목으로 해당 구매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판기

시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한 자판기 운영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식료품점은 자판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 1574](#), 자판기 운영자 및 [간행물 118](#), 자판기 식품 매출은 자판기 매출에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금 신고: 식품점 관련 특별 고려 사항

이 챕터의 정보는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에 필요한 일부 수치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안되었습니다. 납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납세 신고 지침](#)을 참고하거나 [간행물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 (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3-K](#),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의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총 매출

납세 신고서에 입력된 총 매출은 신고 대상 기간의 모든 판매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포함해야 합니다. 총 수입에는 면세 상품 및 과세 상품 매출이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 수수료 및 신용카드 매출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와 무관한 것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과한 서비스 수수료만큼 매출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식품 매출 및 과세 매출 계산 방식

납세 신고를 준비할 때 면세 식품 및 과세 품목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모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방식을 통해 올바른 납세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합니다. 사용한 방식과 무관하게 감사를 통해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사용한 방식이 올바른 납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 전자 스캐닝 시스템
- 구매 비율 방식(식품점의 공식)
- 수정된 구매 비율 방식
- 원가가산법—과세 상품
- 소매재고법
- 판매세 기록
- 과세 대상 판매 기록
- 추정법

전자 스캐닝 시스템

전자 스캐닝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세 매출과 비과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UPC(범용제품코드)에 각인된 정보에서 과세 및 비과세 매출, 판매세 및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집계합니다.

스캔 결과 및 납세 신고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CDTFA 사무소는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 문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매 또는 구매일부부터 4년 동안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 스캐닝 시스템을 사용하는 식료품점의 기록 보존 요건

전자 스캐너를 사용하는 모든 식료품점은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일반 회계 장부 외에도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마스터 리스트

자영업을 운영하던 체인 상점을 운영하던, 판매하는 모든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마스터 리스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샐러드바, 계절 품목 및 델리 품목 등 UPC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리스트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관 유형(종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UPC(범용제품코드)
2. 제품의 과세 또는 비과세 상태
3. 제품 식별 설명
4. 제품의 포장 또는 크기
5.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
6. 부서 번호
7. 도매업체 또는 공급업체 품목 번호



제품 코드 지정 보고서

제품 코드가 정확히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제품 코드의 변경 사항과 관련한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품 또는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제품을 추가하거나 단종하는 결정을 매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터 리스트도 매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시한 면세 식품 매출(전자 스캐너 사용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 변동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매업체는 납세 신고 기간별로 1개 이상의 제품 코드 지정 보고서(PCR)를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전 기간의 보고서 작성 후 발생한 모든 추가 또는 새 제품, 기존 제품 제거 및 기존 제품의 코드 변경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신고 기간의 PCR을 보관하면 해당 기록이 발생한 동일 신고 기간 내의 가능한 오류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신고 기간까지 밝혀지지 않은 코드 지정 오류로 인한 이자 및 가산세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동 보고서

식료품 사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PCR과 동일한 기간을 다루는 제품 이동 보고서 또는 그와 유사한 유형의 재고 추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제품 이동 보고서는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된 동일 제품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품 코드 지정 오류를 확인한 경우, 제품 이동 보고서는 납세 신고 기간 중 판매된 제품의 수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추가 판매세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코드가 잘못 지정된 제품, 코드 지정 오류의 수정 시점, 제품 가격 및 신고 기간 중 판매된 제품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세 과다 징수 사례를 발견한 경우 [규정 1700, 판매세 환급 \(Reimbursement for Sales Tax\)](#)을 참조하십시오.

전자 스캐너를 사용한 납세 신고 시 사용되는 보고서, 기록 및 절차의 일반 원칙

식료품점 소유주는 전자 스캐너 신고 방식의 일반 원칙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다음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생성된 기록 및 보고서의 유형 및 형식
2. 스캔 시스템의 점검, 관리 및 수정 담당자와 관련한 설명 가격, 제품 및 코드 등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된 정보를 입력 및/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규정해야 합니다.
3. 스캐너 시스템에서 푸드 스탬프, 제조업체 쿠폰, 공병 반환 보증금 및 과다 청구 등의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
4.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또는 일부 판매를 처리하는 부서 및/또는 매장이 있을 경우 매출을 설명하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 목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료품점은 과세 및 비과세 상품 구매의 대표 샘플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비율 방식(식료품점의 공식)

이 방식의 경우 식품 구매액과 모든 식료품점의 항목을 비교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면세 식품 매출을 계산합니다. 판매세 환급금을 조정하는 이 공식은 면세 식품 매출을 결정하기 위해 총 식료품 매출에 적용되는 백분율 수치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표시된 예시를 통해 구매 비율 방식이 어떻게 사용되며, 식료품이 아닌 과세 대상 구매 및 판매가 계산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구매 항목을 면세 식품, 과세 식료품 항목 및 식료품이 아닌 과세 항목 등의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행 — 과세 식료품 구매
- 4행 — 면세 식품 구매액
- 1행 및 4행 — 공제 및 할인 조정

구매 비율 방식 예시

다음 예시는 식료품이 아닌 품목의 과세 대상 구매 및 판매가 계산에 산입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 | |
|---|-----------|
| 1. 과세 식료품 구매액 | \$40,000 |
| 2. 판매세 조정 추가($8.25\% \times$ 항목 1) | + 3,300 |
| 3. 조정된 과세 식료품 구매액(항목 1 + 항목 2) | 43,300 |
| 4. 면세 식품 구매액 | + 130,000 |
| 5. 판매세를 포함한 식료품 총 구매액(항목 3 + 항목 4) | 173,300 |
| 6. 면세 식품 비율(항목 4 ÷ 항목 5) | 75.01% |
| 7. 판매세를 포함한 총 매출 | 254,088 |
| 8. 판매세를 포함한 식료품이 아닌 품목의 과세 매출(해당 매출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판매된 제품 중 식료품이 아닌 제품의 과세 대상 원가를 가산하여 매출을 계산하고 총액에 $8.25\% \times$ 판매세를 추가합니다)** | - 31,500 |
| 9. 판매세를 포함한 식료품 매출(항목 7 - 항목 8) | 222,588 |
| 10. 면세 식품 매출(항목 6 x 항목 9) | - 166,963 |
| 11. 판매세를 포함한 과세 품목 매출(항목 7 - 항목 10) | 87,125 |
| 12. 푸드 스탬프로 구매한 과세 품목 차감액(신고 기간 중 교환된 모든 푸드 스탬프의 2%, 예: $2\% \times \$100,000$) | - 2,000 |
| 13. 판매세 포함 과세 대상 금액(항목 11 - 항목 12) | 85,125 |
| 14. 포함된 판매세($.0825/1.0825 \times$ 항목 13) | - 6,488 |
| 15. 세액(항목 13 - 항목 14) | 78,637 |
| 16. 계산된 판매세 납부액($8.25\% \times$ 항목 15) | \$6,488 |

* 적정 세율을 사용합니다. 예시에서는 설명을 위해 8.25%의 세율이 사용되었습니다.

* 적절한 경우 감모손실을 조정합니다. 규정 1602.5,

식료품점을 위한 신고 방식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조정이 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재고 변동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1행 — 과세 식료품 구매

a. 다음은 과세 식료품 구매액에 포함해야 하는 구매의 일부 목록입니다:

- 맥주 구매액
- 맥주, 와인 콜러 및 탄산음료의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 탄산음료 구매액
- 담배 구매액
- 와인 구매액
- 모든 기타 과세 식료품 구매액(자세한 과세 식료품 목록은 [부록 A](#) 참조)

b. 과세 식료품 구매액에 다음 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음료의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요금(CRV)
- 증류주 구매액
- 가축 사료 구매액
- 농장 비료 구매액
- 가솔린 구매액
- 따뜻한 조리 식품 재료
- 제조 비용*
- 식료품이 아닌 품목의 과세 대상 구매액(자세한 목록은 [부록 B](#) 참조)
-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담는 데 사용되는 종이봉투 및 비닐봉지
- 처리 비용*
- 식당 구매액
- 스낵바 구매액
- 운송 비용*
- 자판기 판매용 구매액
- 보관 비용*

*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할 경우 구매 비율 방식 목적상 식료품 구매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된 구매 비율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은 CDTFA 승인에 따라 식료품 구매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과세 대상 식료품 구매액에 면세 식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면세 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4행과 관련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d. 대량 리베이트, 판촉 공제 또는 구매 할인을 받은 경우 신고 시 사용한 구매 가격에 할인된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참조 1행 및 4행](#) — 공제 및 할인 조정)

4행 — 면세 식품 구매액

a. 다음은 면세 식품의 일부 목록입니다:

- 베이커리 재료 구매액
- 델리 구매액
- 육류 구매액(육류 부산물 관련 조정 금지)
- 신선식품 구매액
- 모든 기타 면세 식품 구매액

b. 수량 리베이트, 판촉 공제 또는 구매 할인을 받은 경우 신고 시 사용한 구매 가격에 할인된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1행 및 4행](#) — 공제 및 할인 조정)

1행 및 4행 — 공제 및 할인 조정

현금 할인, 구매량 리베이트, 수량 할인 및 판촉 공제는 비용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구매 비율 방식 목적상 과세 식료품 구매 및 면세 식품의 구매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현금 할인: 구매 비율 신고 방식에서 사용되는 현금 할인은 식료품점에서 즉시 결제를 위한 청구서 가격 인하를 의미합니다.



구매량 리베이트, 수량 할인: 구매 비율 신고 방식에서 사용되는 구매량 리베이트, 즉, 수량 할인은 대량 구매 시 구매 또는 판매된 개수에 기반한 가격 공제 또는 인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리베이트 또는 할인은 구매한 제품의 판매를 식료품점에서 광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판촉하는 특정한 계약상 의무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해당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비영리 협동조합이 회원에게 분배하는 후원 배당금이나 회원 또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리베이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촉 공제: 구매 비율 신고 방식에서 사용되는 판촉 공제액은 판촉 기간 중 판매 또는 구매한 개수를

기준으로 식료품점에 제공되는 가격 인하를 의미합니다. 공제는 판매 또는 구매한 개수와 직접 관련이 있지만 식료품점에서 추가 판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은 식료품점의 광고에 표시되지만, 식료품점은 해당 제품을 광고할 계약상 의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소매가는 프로모션 기간 중 인하되거나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촉 공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열 또는 기타 판매 계획 공제
- 구매량과 무관한 일정 가격으로 진열 공간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지불액
- 전국 광고 요금에 기반하며 구매량, 판매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동 광고 공제 협동 광고 공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비의 일부를 식료품점에 보상하는 공제입니다.

8행 — 식료품이 아닌 품목의 과세 매출

증류주, 위생용품 잡화, 하드웨어 등 식료품이 아닌 과세 품목의 판매 및 구매는 비율 계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록상 해당 매출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판매된 제품 중 식료품이 아닌 제품의 과세 대상 원가를 적정 가산율로 산정해 더하고 판매세도 추가하여 매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매출 계산 시 감모손실 조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매 비율 방법을 사용할 경우 조정액은 식료품이 아닌 과세 품목 원가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규정 1602.5](#), [식료품점을 위한 신고 방식의 섹션 \(d\)](#)에서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정된 구매 비율 방식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구매 비율에 따라 신고할 경우 수정된 버전의 구매 비율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비율 공식에 직접 수행한 처리, 제조, 보관 또는 운송 비용을 포함할 경우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된 버전에 따른 계산 결과 식품 면세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 기간 동안 재고에 따라 조정된 과세 대상 구매를 소매 대상으로 확장하거나 대표 기간 동안 재고에 따라 조정된 과세 대상 구매액에 이익을 가산하여 과세 매출을 계산함으로써 수정된 방식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사용한 수정된 구매 비율 방식을 문서화하여 감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과세 상품을 소매재고법으로 확장"과 관련한 정보는 [AM 0905.15](#) 참조).

원가가산법—과세 상품

이 방식은 재고에 따라 조정된 과세 상품 원가에 적절한 이익을 가산하여 신고 기간의 과세 매출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원가, 가격 인하, 수량 할인 및 상자 할인에 따른 조정이 수행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 상품 원가의 최대 1%까지 감모손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요소 비율(원가가산율)은 상품 그룹별로 구분되었으며 3년 이내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구매 주기를 포함하는 대표 구매 상품의 매대 테스트를 실시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 각 상품의 판매 원가에 상품 가산 요소 비율이 적용되어 각 상품에 대한 과세 매출을 결정합니다.

다른 절차로는 모든 과세 상품의 그룹별 구분 시 전체 평균 가산 요소를 사용하여 신고 기간의 총 과세 매출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당 요소는 신고 기간 중 과세 매출의 전체 원가에 적용됩니다. (상품 가산 요소를 결정하는) 매대 테스트 시 완전한 구매 주기(일반적으로 1개월)를 포함하는 구매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전체 평균 가산 요소의 계산을 위해 1년의 기준 기간 동안 각 상품 원가에 매대 테스트를 통해 결정된 가산 요소가 적용됩니다.

원가가산법 예시

신고할 과세 매출액 계산(20xx년 3분기)

| | |
|---|-----------|
| 기록된 과세 매출 원가 | \$403,815 |
| 1% 감모손실 공제 차감 | - 4,038 |
| 조정된 과세 매출 원가 | \$399,777 |
| 전체 과세 대상 가산 요소 ¹ (31.59% + 100%) | x 131.59% |
| 계산된 과세 매출(131.59% x \$399,777) | \$526,067 |
| 계산된 판매세 납부액(8.25% x \$526,067) ² | \$43,401 |

¹ 가산율 계산법 설명을 확인하려면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참조합니다.

² 적정 세율을 사용합니다. 예시에서는 설명을 위해 8.25%의 세율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과세 대상 가산을 계산(테스트 연도: 20XX)

| | A 기록된 매출 원가 | B 가산 요소 ¹ (MU+100%) | C 계산된 과세 매출 (AxB=C) |
|--|--------------------------|--|--|
| 상품 식료품 과세 대상액 | | | |
| 맥주 | \$105,078 | 132.49% ² | \$139,218 |
| 와인 | 32,438 | 147.19% | 47,745 |
| 탄산음료 | 223,815 | 135.50% | 303,269 |
| 담배 및 관련 제품 | 100,781 | 112.63% | 113,510 |
| 종이 제품 | 131,931 | 127.55% ² | 168,278 |
| 반려동물 사료 | 142,316 | 123.87% | 176,287 |
| 비누 및 세제 | 125,712 | 110.95% | 139,477 |
| 세탁용품 | 26,101 | 123.87% ² | 32,331 |
| 가정용 세제, 왁스 및 살충제 | 23,087 | 127.05% | 29,332 |
| 빗자루, 걸레, 솔 및 스펀지 | 7,522 | 139.26% | 10,475 |
| 야외 생활 필수품(숯 연탄, 스타터 액체 등) | 6,519 | 124.40% | 8,110 |
| 과세 대상 식료품 총액 | \$ 925,300 | | \$1,168,032 |
| 식료품이 아닌 과세 대상 품목 총액 | + 358,626 | 145.40% | + 521,442 |
| 과세 대상 매출 총액 | \$1,283,926 | | \$1,689,474 |
| 계산된 과세 매출 | | | - \$1,283,926 |
| 총 이익 | | | \$405,548 |
| 전체 가산율(\$405,548 ÷ \$1,283,926) | | | 31.59% |

¹ 모든 가산율은 원가, 가격 인하 또는 수량 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예: 보루로 판매된 담배).

² 이 상품에 대한 가산율 계산 시 사용되는 매대 테스트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대 테스트 기간: 20XX 4월

| 맥주 매대 테스트 | | | | |
|----------------------------|--------|-----------------------|-------------------|---------------------|
| 날짜 | 송장 번호 | 공급업체 | 원가 | 소매가 세금 미포함* |
| 4-2-XX | 629452 | Lane Distributing Co. | \$559.64 | \$737.20 |
| 4-2-XX | 39819 | National Brewers | 222.72 | 297.20 |
| 4-4-XX | 45293B | City Distributors | 553.78 | 737.52 |
| 4-7-XX | 098757 | Smythe Brewing Co. | 475.66 | 620.11 |
| 4-7-XX | 75923 | Bunkers Brewers Inc. | + 173.10 | + 237.79 |
| 합계 | | | \$1,984.90 | \$2,629.82 |
| 원가 | | | | - \$1,984.90 |
| 총 이익 | | | | \$644.92 |
| 가산율(\$644.92 ÷ \$1,984.90) | | | | 32.49% |

*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

| 종이 제품 매대 테스트 | | | | | |
|----------------------------|--------|------------------------|-----------|-------------------|---------------------|
| 날짜 | 송장 번호 | 공급업체 | 일반적 설명 | 원가 | 소매가 세금 미포함 |
| 4-3-XX | 123276 | Monsanto-Pacific, Inc. | 키친타올 | \$962.59 | \$1,152.80 |
| 4-3-XX | B30031 | Value-Line Products | 종이 접시, 냅킨 | 514.29 | 696.50 |
| 4-5-XX | 191156 | Lunch-a-Bunch | 봉투 | 396.31 | 504.35 |
| 4-8-XX | 42445A | Fawcett and Son | 티슈 | 1,204.14 | 1,584.45 |
| 4-8-XX | 19416 | M. I. Green Paper Co. | 알루미늄 호일 | + 481.52 | + 601.14 |
| 합계 | | | | \$3,558.85 | \$4,539.24 |
| 원가 | | | | | - \$3,558.85 |
| 총 이익 | | | | | \$980.39 |
| 가산율(\$980.39 ÷ \$3,558.85) | | | | | 27.55% |

세탁용품 매대 테스트

| 날짜 | 송장 번호 | 공급업체 | 일반적 설명 | 원가 | 소매가 세금 미포함 |
|----------------------------|---------|------------------------|--------|-------------------|---------------------|
| 4-3-XX | 314652 | Silver Seal Products | 표백제 | \$192.23 | \$224.96 |
| 4-4-XX | B92845 | Lewis and Final | 암모니아 | 262.01 | 330.29 |
| 4-7-XX | 1-22958 | Columbia Laundry Prod. | 세탁용 풀 | 268.92 | 324.42 |
| 4-8-XX | 496372 | Arnile and Co. | 경수 연화제 | 180.47 | 234.87 |
| 4-8-XX | A19485 | Goldfard and Hubbard | 세제 | + 190.52 | + 240.75 |
| 합계 | | | | \$1,094.15 | \$1,355.29 |
| 원가 | | | | | - \$1,094.15 |
| 총 이익 | | | | | \$261.14 |
| 가산율(\$261.14 ÷ \$1,094.15) | | | | | 23.87% |

소매재고법

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대형 식료품점에서 사용하기에만 적합하며, 적절한 자동 데이터 처리 장비 성능을 갖춘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재고 및 구매 관련 기록을 소매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구매 송장이 접수되면 상품은 면세 식품 및 과세 품목별로 구분되며 소매가로 가격이 책정되고 기록됩니다. 신고 기간 동안 소매 재고에 따라 조정되고 면세 식품 및 과세 품목별로 구분된 총 소매 금액은 신고 기간 중 예상되는 면세 및 과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원가, 가격 인하, 수량 할인 및 상자 할인에 따른 조정이 수행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 품목의 최대 1%까지 감모손실 조정이 허용됩니다.



소매재고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02.5](#), 식료품점을 위한 신고 방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양해야 할 기타 방식

판매세 기록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판매세는 신고 기간 동안 과세 매출을 결정하기 위해 등가의 과세 대상 금액으로 변환됩니다. 이 방식의 사용이 부적절한 일반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대 직원이 판매된 모든 품목의 과세 여부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산대 직원은 매우 바쁘게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목 분류 오류 또는 추가된 세금 환급액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담배와 연초와 같은 특정 유형의 상품을 세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래 행위도 있습니다.

판매세 기록 방식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판매 기록

이 방식은 판매세 기록 방식과 유사하지만 신고 기간의 과세 매출을 결정하기 위해 금전등록기의 별도 키를 통해 과세 매출액이 기록되며 집계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판매세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방식도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추정법

추정치를 기반으로 결정세액을 신고하는 다음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이전 기간에 신고된 세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
- 이전 기간의 총 매출 대비 과세 매출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추정
- 근거 없는 가산을 적용 또는 CDTF에서 승인하지 않은 기타 방식을 기준으로 한 추정

공제

공제는 면세 상품 매출에서 발생한 총 수입에 대해 처리됩니다.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적 면세 상품은 *비과세 식품 판매입니다*. 면세 식품 매출에 대한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 모든 식품 구매는 기록에서 과세 품목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제를 청구할 때 청구된 금액이 실제로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첫 번째 행인 '총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증빙하는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손실

감모손실(원인 불명 손실)

소매재고법 또는 원가가산법을 사용할 경우 부패, 파손 및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면 식료품점은 신고 목적으로 과세 상품 비용의 최대 1%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으로 *구매 비율 방식*이 사용될 경우 식료품이 아닌 과세 품목 비용의 최대 3%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감모손실 조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감모손실 조정은 가격 인상 또는 소매로 구매 확장이 포함된 신고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비율 신고 방식에서 식료품이 아닌 과세 품목의 매출이 식료품이 아닌 과세 대상 구매의 가격 인상 또는 소매 대상으로의 확장이 아닌 실제 판매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감모손실은 이미 기록된 총 수입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감모손실 조정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강도, 절도 및 매장내 들치기

감모손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은 특정한 형식의 손실 증빙 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손실 추적을 위해 고용된 사설 기관의 보고서, 경찰 보고서, 보험 청구서 또는 증빙 문서 등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감모손실과 마찬가지로 실제 판매를 기준으로 과세 매출을 신고할 경우 강도, 절도 및 상점 절도에 대한 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매출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현금 강도는 판매세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 매출에 대한 판매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금

상품 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은행에서 미지급으로 반환되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소득세 목적상 상각 처리된 경우 기존 판매에 포함된 과세 품목의 금액만큼 대손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매에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 해당 신고 기간 동안 총 매출 대비 총 과세 매출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품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 판매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수표가 교환된 경우 판매액 초과 부분은 대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매액이 수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대손금 또는 부도수표 금액을 추후 고객에게 회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제 청구 후 해당 금액을 회수한 경우, 이전의 공제 청구분을 추가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손금 회수 시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손금 회수를 위한 보상으로 제3자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한 회수 부채분에 대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후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 시점의 세율에 따라 대손 공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규정 1642](#), [대손금을 참조하십시오](#).

사업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필수 기록을 더 빨리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최소 4년 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 4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하더라도 감사 완료 시까지 감사 기간이 포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과 관련하여 CDTFA와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또는 다른 결정(청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청구할 경우 해당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POS 시스템에서 4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데이터를 덮어쓰는 경우, 상기 명시된 필수 기간 동안 덮어쓰기 되거나 시스템에서 제거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송 및 유지하여 이용 가능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웹사이트](#)에서 [간행물 116](#), [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 또는 [규정 1698](#), [기록](#)을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출 축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장치

매출을 숨기거나 제거하고 기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고의로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할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반자는 최대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및 최대 \$10,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법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이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리소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무소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에서 모든 사무소 위치가 포함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

www.cdtfa.ca.gov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 참조).

간행물의 다국어 버전은 웹사이트(www.cdtfa.ca.gov/formspubs/pubs.htm)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리소스는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입니다.

세금 정보 보고서

분기별로 제공되는 [세금 정보 보고서\(TIB: Tax Information Bulletin\)](#)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TIB 시간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서와 관련한 개별지도도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특정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받았고, 귀하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하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email)에 방문하여 자문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 제품 평가세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의 일반 정보를 받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자문은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간행물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70-K,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를 참조하거나 1-888-324-2798로 연락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제조업 가이드

간행물별로 목적이 다릅니다.

귀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규정, 양식, 간행물 및 제조업 가이드](#)의 발췌 목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출판물의 스페인어 버전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규정

- 1602 식품(Food Products)
- 1602.5 식료품점을 위한 신고 방식(Reporting Methods for Grocers)
- 1603 과세 식품 매출(Taxable Sales of Food Products)
- 1669 재판매를 위해 보유한 자산의 실연, 전시 및 사용—일반(Demonstration, Display, and Use of Property Held for Resale—General)
- 1698 기록(Records)
- 1700 판매세 환급(Reimbursement for Sales Tax)

간행물

- 17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Appeals Procedures: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 and Fees)
- 22 식음료 산업(Dining and Beverage Industry)
- 24 주류 판매점(Liquor Stores)
- 27 드러그스토어(Drug Stores)
- 44 지방세 - 판매세 및 사용세(District Taxes - Sales and Use Taxes)
- 51 중소기업을 위한 과세 제품 및 서비스 자료 안내서(Resource Guide to Tax Products and Services for Small Businesses)
- 58A 기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How to Inspect and Correct Your Records)
- 61 판매세 및 사용세: 면세 및 제외(Sales and Use Taxes: Exemptions and Exclusions)
-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 73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Your California Seller's Permit)
- 74 계정 해지(Closing Out Your Account)
- 75 이자, 벌금 및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Interest, Penalties, and Collection Cost Recovery Fee)
- 76 감사(Audits)
- 103 재판매를 위한 판매(Sales for Resale)
- 110 캘리포니아주 사용세 기본 사항(California Use Tax Basics)
- 113 쿠폰, 할인 및 리베이트(Coupons, Discounts and Rebates)
- 116 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Sales and Use Tax Records)
- 118 자판기 식품 판매(Vending Machine Food Sales)

산업 가이드

- 식료품점 세금 안내서(Tax Guide for Grocery Stores)

부록: 식료품점 판매 제품 분류

본 챕터에 열거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A. 과세 식료품 품목
- B. 식료품이 아닌 과세 품목

판매의 과세 여부와 관련한 질문은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A. 과세 식료품 품목의 예시

| | |
|-----------------------|------------------------|
| 알루미늄 호일 | 전구 및 퓨즈 |
| 암모니아 | 점화용 액체 |
| 제산성 민트 캔디 | 목감기용 사탕(약용) |
| 도시락 가방 | 성냥 |
| 맥주 | 대걸레, 걸레 핸들 |
| 새 모이 | 날벌레 퇴치제—모든 종류 |
| 새 간식(사료) | 머핀 페이퍼 |
| 표백제—세탁 | 종이 컵, 접시, 냅킨, 테이블 커버 |
| 병 세척 솔 | 키친타올, 빨대 |
| 빗자루 | 반려동물 사료 |
| 양초 | 플라스틱 식기 |
| 통조림 용기 및 뚜껑 | 비닐 필름(예: Saran Wrap 등) |
| 탄산음료(일반) | 냅비 수세미 |
| 고양이 사료 | 파우더(세척용) |
| 숯불 연탄, 점화용 액체 | Roloids |
| 담배 | 녹 얼룩 제거제 |
| 시가 | 아이스크림 제조용 소금 |
| 청소제 및 광택제(가정용) | 샌드위치 포장지 |
| 옷핀 | 수세미 |
| 착색 추출물 | 은 광택제 |
| 기침 완화 사탕 | 비누 및 세제 |
| 탈취제(방향제) | 스펀지 |
| 식이 보충제/보조제(첨가제) | 분무기(빈 제품) |
| 행주 | 세탁용 풀 |
| 하수구 클리너(Drano 등) | 테이블 커버—종이 |
| 염료—의류 | 타일 세정제 |
| 페이셜 티슈 | 화장지 |
| 바닥 왁스 및 도포용 기구 | 이쑤시개 |
| 파리채 | 가구 커버용 세정제 |
| 염료—요리, 가열 | 연수기(세탁) |
| 가구 광택제 | 연수기 소금 |
| 쓰레기봉투 | 왁스 페이퍼 |
| 유리세정제 | 왁스 리무버 |
| 얼음 | 작은 빗자루 |
| 해충 퇴치용 스프레이, 살충제, 분무기 | 와인 |
| 클리넥스 | |

B. 식료품이 아닌 과세 품목의 예시

| | |
|-------------------|---------------------|
| 부속품—차량 | 유리컵 |
| 접착 테이프 | 장갑 |
| 탄약 | 머리 염색제 |
| 제산성 액체 | 헤어 스타일링 제품 |
| 기기—가정용, 차량용 | 하드웨어 |
| 차량 청소제, 광택제, 왁스 | 약용 클렌저 |
| 베이비 오일 | 반려동물 의약품 |
| 배터리—차량, 손전등 | 공책 |
| 서적 | 묘목 |
| 거품 입욕제 | 연필, 펜 및 잉크 |
| 카메라 | 반려동물 용품 및 장비(사료 제외) |
| 자기류 | 냄비와 프라이팬 |
| 담배 라이터 | 분말(얼굴 또는 신체용) |
| 의류 | 개껌 |
| 화장품 | 면도기 |
| 탈취제(인체) | 면도날 |
| 그릇 | 고무줄 |
| 증류주 | 반려동물 화장실 용품 |
| 위생용품 잡화 | 학용품 |
| 전기 공급 제품 | 스카치테이프 |
| 농장 및 정원용 도구 | 면도 크림 및 로션 |
| 비료 | 샴푸 및 린스 |
| 필름 | 신발 끈 및 광택제 |
| 총기 | 은 제품 |
| 손전등 | 스포츠 용품 |
| 꽃과 정원용 씨앗 | 문구류 |
| 꽃 | 선글라스 |
| 연료 및 윤활유 | 선텐 로션 및 자외선 차단제 |
| (디젤 연료, 그리스 등 포함) | 실 |
| 가구 | 도구 |
| 정원 도구 및 용품 | 치약 |
| | 장난감 |

소셜 미디어 팔로우



발표 31-K | 2022년 4월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MAILING ADDRESS: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